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30313-261	(전화번호 375)	건결규정 조 / 랑 주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6. 4	결재 1986. 4. 2 도시계획국	
보존연한	영구	86. 4. 28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86. 5. 1 도시계획국	법무담당관 심사필 경로종제인 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김영규	'86. 4	1986. 4. 28 검인 1986. 4. 28 공공부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시 장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제1안	고시제 266		
수신내부일계			
제목 같은건			
1.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건설부 고시 제361(85.8.27) 호로 변경결정된 문래근린공원과 건설부 고시 제175(86.4.23) 호로 변경결정된 남산자연			
공원의 2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정서			
마목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인 도면을 도시계획 지적승인 하고 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공원 지적승인 내용 판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변경전 변경후
자연	남산공원	중구 예장동1-81, 필동2가	2,971,546 2,970,534 감1,012m ²
공원		84-33일대	
"	관악산	관악구 신탐동408일대	20,354,025 20,346,925 감7,100m ²
	공원		

1205-25(2-1)A(강)
1981. 12. 15승인

정칙 질서 창조
4975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
가 40-41 1985. 9. 5.

근린 공원	대방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869일대	53,080	51,470	감1,610m ²
공원	문래공원	영등포구 문래동3가59일대	24,408	23,611	감797m ²
끝.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 시 제 호			제361(85.8.27)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남산자연공원의 2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건설부 고시 제361(85.8.27)호로 변경결정된 문래근린공원과 건설부 고시 제175(86.4.23)호로 변경결정된 남산자연공원의 2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 4 월 특 별 시 정					
가.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자연	남산공원	중구 예장동1-81	2,971,546	2,970,534	감1,012m ²
공원		필동2가84-33일대			
"	관악산공원	관악구 신림동408일대	20,354,025	20,340,925	감7,100m ²
근린 공원	대방공원	영등포구 신길동869일대	53,080	51,470	감1,610m ²
"	문래공원	영등포구 문래동3가 59일대	24,408	23,611	감797m ²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제 3 안					
수 신 건설부장관					
참 조 도시국장					
제 목 같은건					

결재
1986. 4. 2. 4976

1. 귀부고시 제361(85.8.27)호 및 제175(86.4.23)호로 변경결정된 저희시	
공원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서 각 1부. 끝.	
제 4 안	
수 신	총무처장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게재 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다. 근 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첨부 : 고시문 사본 각 2부. 끝.	
제 5 안	
수 신	공보관 발신 : 국장
제 목	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다. 근 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첨부 : 고시문 사본 각 2부. 끝.	
제 6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도시정비과장
제 목	같은건
1. 귀기관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일반인의 열람 및 도면정리등 도시계획사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사본 각 1부, 끝.	
수신처 : 증구, 영동포구, 관악구청장.	
제 7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발신 : 과장
제 목 같은건	
1. 우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 하였고 알력 드립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사본 각 1부, 끝.	
수신처 : 시설계획과장, 공원과장.	

